

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

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운항규칙에 의거 다음 수역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저속 운항구간으로 지정고시 하오니, 10노트 이하 저속 운항하시기 바랍니다.

2018. 6. 18

부 산 해 양 경 찰 서 장

□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

1. 구 역

동백섬 끝단에서 운촌항을 포함하여 마린시티 해안가를 따라 100m 이내 해역(A-B-C-D-E 해점을 연결한 내측)영강 1호교 ~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

※경계해점 : 동백섬 끝단(35-09-06.8N 129-09-02E)

2. 시행일 : 2016.6.17부터

3. 대 상 :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(관공선, 구조선 제외)

4. 사 유

- 동백섬 앞 암초 및 간출암 산재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우려
- 운촌항 인근 레저활동객 증가로 과속운항에 따른 충돌 등 사고 우려
-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

5. 벌 칙

- 100만원 이하 과태료(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)

6. 지정도면 : 별첨

- 재검토 기한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6월 18일까지로 한다.

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『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』 고시(부산해양경비안전서 제2016-14호)는 폐지한다.

[별첨]

○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도면

